공 개

의안번호	제 131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3. 18. (제 5 차)

의결사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3. 18.

1. 의결주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후관리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요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후관리 이용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그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함.

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요율 인상(안 제42조제3항)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출연 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곱하는 비율을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의

경우 ‘연이율 10만분의 30’에서 ‘연이율 10만분의 45’로, 은행의 경우 ‘연이율 10만분의 60’에서 ‘연이율 10만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24. ~ 2026.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서민금융 지원 확대)

<별 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신용보증)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을 “10만분의 45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 “10만분의 4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만분의 60”을 “10만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4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금융회사의 출연금 요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신용보증)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②(생 략)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 ---------- 10만분의 45를 -- ---------- ---------- ---------. ---------- ---------- ---------- ----------

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 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0만분의 45----------.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④ ---------- 10만분의 100----------.
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2025년 12월 31일까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신용보증금액 등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하며, 같은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말한다.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출연금 = A - (B 및 C 중 적은 금액) A: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금 요율 B: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비율 - 10만분의 30) C: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 × 1천분의 5	
⑥ ~ ⑨ (생 략) <신 설>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금융회사의 출연금 요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연 락 처	(02) 2100 - 2614